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로사업을 사업인정 의제사업으로 추가》
■ 권영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935호)

2024. 1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권영진의원 대표발의(제2204935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참고사항	1
4. 검토의견	3
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로사업을 사업인정 의제사업으로 추가[안 별표 제2호(96) 신설]	3

I. 권영진의원 대표발의(제2204935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권영진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10. 28.

다. 회 부 일 : 2024. 10. 2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신도시 등 개발 시 장래 입주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추진 중이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인·허가 지연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도로사업도 빈번하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도로사업의 경우 국토부가 승인하여 고시한 경우 토지 등의 수용·사용권을 부여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권영진의원 대표발의)되어 있는 만큼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도로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4. 검토의견

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로사업을
사업인정 의제사업으로 추가[안 별표 제2호(96) 신설]

현행	개정안
[별표] 1. (생략) 2.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 (1) ~ (95) (생략) <u><신설></u>	[별표]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 (1) ~ (95) (현행과 같음) <u>(9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로사업</u>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개정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함)에 따른 도로사업’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으로 추가하기 위하여 같은 법 별표 제2호(96)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토지보상법」 제4조¹⁾에서는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軌道)·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방풍(防風)·방화(防火)·방조(防潮)·방수(防水)·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있는 사업을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열거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같은 법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²⁾.

이에 따라 「토지보상법」 별표에서는 총 114개의 법률에 근거하여 토지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이 중 현행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³⁾이 의제⁴⁾되는 사업은 총 95개임.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 6. (생략)
7.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 4)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의 경우 개별법상 인·허가 등(지구·구역지정, 개발계획승인 등)이 있는 경우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됨.

등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종합적 검토⁵⁾를 거쳐 사업인정 여부를 결정함.

개정안이 「토지보상법」 별표 제2호에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 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으로 추가하려는 ‘「광역교통법」에 따른 도로사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대표발의, 제2203392호, 이하 “광역교통법 개정안”이라 함) 제7조의7에 따른 도로사업⁶⁾(이하 “광역교통 개선대책 도로사업”이라 함)임.

5)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제시하는 공익성 검토기준은 ① 법령상 전제(토지보상법 제4조 각 호 및 별표에 규정된 사업에 해당하는지, 개별법에서 정한 수용재결의 신청요건을 갖추었는지), ② 시행자 의사와 능력(사업을 수행할 정당하고 적극적인 의사를 보유하고 있는지, 사업을 수행할 충분한 능력을 구비하였는지), ③ 입법목적 부합성(법령목적, 상위계획·지침, 절차 등에 부합하였는지, 영입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대중성·개방성이 있는지), ④ 공익 우월성(사업으로 얻게 되는 공익이 사업으로 잃게 되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있는지), ⑤ 사업계획의 합리성(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이라 볼 수 있는지), ⑥ 수용 필요성(수용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지, 수용 대상 및 범위가 적정한지), ⑦ 공익 지속성(사업의 정상 시행 및 완공 후 지속적 공익 관리가 가능한지) 등임(한국토지공법학회, 「사업인정 의제사업 공익성 판단 기준 등 연구」(국토교통부 연구용역), 2016. 8.).

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대표발의, 제2203392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7(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사업계획 승인 등) ①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된 둘 이상의 시·도를 통과하는 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기반시설인 도로를 말하며, 제7조의10에서 같다)의 신설, 확장 또는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사업(이하 “도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도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신속한 도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로사업에 대한 계획을 승인받아 해당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후단 및 각 호 생략) ②~③ (생략)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호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1. 위치 및 면적 / 2. 도로사업시행자 / 3. 사업의 종류 4. 수용 또는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세목 등 주요 사항 5. 지형도면 6. 그 밖에 도로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광역교통법 개정안」은 광역교통 개선대책⁷⁾ 내 주요 도로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관계된 인허가의 의제 및 토지 수용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광역교통법」에서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함)에 걸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를 ‘광역도로’⁸⁾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8(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④ (생 략)
<신 설>	제7조의9(토지 등의 수용 등) ① 도로사업시행자는 도로공사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의7제4항에 따라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도로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사업 시행기간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대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지역별로 분산되어 시행됨에 따라 광역적인 교통 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종합적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도시권”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이하 “광역도로”라 한다)

현행 「광역교통법」 제7조의5⁹⁾, 「토지보상법」 제4조제2호¹⁰⁾ 및 같은 법 별표 제2호¹¹⁾ 등을 종합하면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된 광역도로의 건설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공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상 기반시설 설치사업¹²⁾으로서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함¹³⁾.

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5(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노선 인정)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라 건설되는 도로에 대하여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에서 구분하는 도로의 기능 또는 목적에 따라 「도로법」에 따른 노선을 인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軌道)·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방풍(防風)·방화(防火)·방조(防潮)·방수(防水)·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제4조제8호 관련)

2.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27) 「도로법」에 따른 도로공사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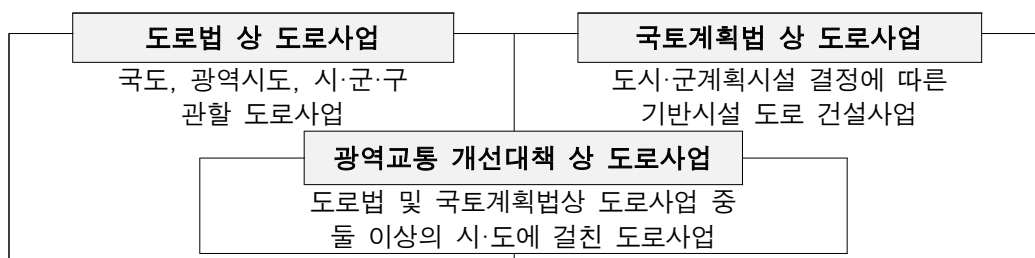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사. (생략)

7.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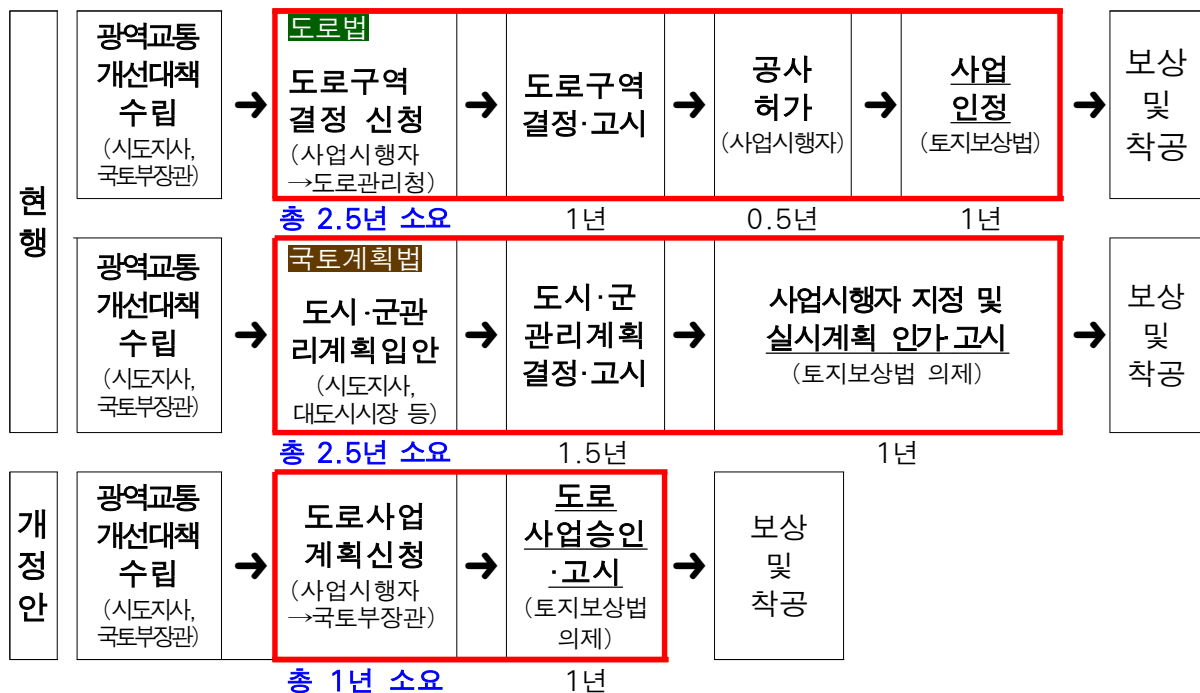
10.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13) 관련법 간 도로사업의 비교(자료: 국토교통부)



그런데, 현행 「광역교통법」에 따르면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된 광역도로의 건설 시 사업시행자가 도로관리청이 아닌 경우, 관할 도로관리청의 도로구역 결정·고시에 이어 사업시행자가 공사허가 및 사업인정을 받은 이후 토지보상 및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어, 통상적으로 보상 착수 관련 사업승인 절차에 약 2.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도로사업 추진절차 개편안 】



※ 자료 : 국토교통부

이와 관련하여 「광역교통법 개정안」 제7조의9의 ‘토지 등의 수용 등’ 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법 개정안」 제7조의7제4항에 따라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 도로사업의 보상절차를 앞당기는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광역교통법 개정안」은 광역교통 개선대책 도로사업의 신속한 이행을 도모하여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적기에 해소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되며, 국토교통부는 「광역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사업계획을 직접 승인·고시할 경우 착공에 이르기까지의 소요시간은 총 1년으로 현행 대비 약 1.5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임.

이에 「토지보상법」 별표 제2호에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으로 ‘「광역교통법」에 따른 도로사업’을 추가하려는 개정안은 「광역교통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광역교통법 개정안」 제7조의9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등’의 특례 규정과 「토지보상법」 간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같은 법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서만 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토지보상법」 제4조의2¹⁴⁾를 고려할 때, 「광역교통법 개정

1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안」이 입법화될 경우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광역교통법 개정안」은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도로사업에 대한 보상절차를 앞당겨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광역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토지 등의 수용 등’의 특례 규정이 반영되는 경우 법률간 정합성을 위해 「토지보상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현행 「토지보상법」에 도로사업이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어 개정안에 따라 별표 제2호(96)이 신설되더라도 토지등의 수용·사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의 유형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한편, 개정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대표발의, 제22033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개정안의 심사 경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78

참고 1

토지보상법 공익사업 유형

◆ 토지보상법에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고 있으며, 사업인정* 절차를 통해 토지 등의 사용 및 수용권 부여

*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토지보상법 제20조)

구분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는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제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개별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제4조제8호 및 별표)	
		제1호 사업인정사업 (19개)	제2호 사업인정의제사업 (95개)
대상	토지보상법 제4조제1호 내지 제7호 사업 - 국방·군사, 철도·도로 등 공공사업, 청사 공장 등 공공용 시설사업, 주택 및 택지· 산단 조성사업 등 사업유형 열거 〈사례〉 (1호) 국방대 이전 (2호) 비관리청도로공사 (3호) 공장, 정원, 갯벌, 지역특구 (4호) 우제류복원센터연구소 (5호) 행복주택 등	토지보상법 제4조제8호 사업 - 토지보상법 개정('15.12월)을 통하여 개별 법률에 따른 토지수용 가능 사업을 토지보상법 별표에 열거 〈사례〉 ·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응급조치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	〈사례〉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수도법」에 따른 수도사업 ·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사업
인정 권자	국토부장관	국토부장관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승인권자 (해당 기관장, 시·도지사 등)
인정 절차	사업인정 신청(사업시행자) → 공익사업 대상여부 검토(국토부) → 의견청취 및 중토위 협의(국토부) → 사업인정 고시(국토부)	사업인정 신청(사업시행자) → 의견청취 및 중토위 협의(국토부) → 사업인정 고시(국토부)	사업승인 신청(사업시행자) → 의견청취 및 중토위 협의 (인·허가·승인권자) → 지구지정·사업계획 승인·고시 (인·허가·승인권자)
개정 연혁	수목원 추가('05년),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신설('08년),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신설('14년)	별표 신설('15.12월) 이후 삭제 3개, 신설 6개 → (삭제) 세계선수권대회법,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법, 신공항건설촉진법 → (신설) 해양클러스터법, 도시재생법, 빈집법, 수자원조사법,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법, 가덕도신공항법 ※ 법 제4조의2제3항 신설로 사업인정의제사업에 대해 5년마다 재검토 후 폐지·변경 또는 유지 조치 필요 (‘21.10월)	
대상 사업 추가 요건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개별 법령 내용(사업내용 구체화,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공공필요 사업에 한해 수용할 수 있도록 제한, 민간사업시행자의 수용 요건 강화 등)
특징	① 토지보상법 제4조제1호 내지 제7 호 대상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 의 공공성 및 수용의 필요성 부족 시 사업인정 거부(국토부장관) ② 사업인정기간 약 6개월 소요	① 토지보상법 별표 대상 사업이라 하더라도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부족시 사업인정 거부(국토부장관) ② 사업인정기간 약 6개월 소요	① 개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승인만으로 토지 수용 가능 (사업인정 거부가 없어 수용권 남발 가능성 존재) ② 사업인정기간 단축 (6개월→1개월)

※ 자료 : 국토교통부

① 「도로법」에 따른 도로사업

제82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고시 또는 변경 고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도로관리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의 시행기간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36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도로사업)

제9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에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함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에 하여야 한다.

□ 추진배경

- 신도시 개발 등으로 대도시권의 생활권이 광역화됨에 따라 교통수요 지속 증가 및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 심화
- 이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문제 완화와 선교통-후개발 추진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 제도 도입(‘97.4)

* (법적근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2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도로 확장·신설, 철도노선 및 역사신설, 접속·환승시설 신설, 대중교통 조정 등에 관한 대책

□ 세부내용

- (대상) 면적 50만m² 이상 또는 인구 1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

* 택지개발, 도시개발, 경제자유구역, 지역개발, 온천·관광지·유원지·공원개발 사업 등

- (수립시기)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 * 개발사업 유형마다 상이

- (수립권자)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주요 사업)

- (심의·확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수립현황) '23년 기준, 130개 지구(1,353개 사업) 수립·확정

- (재원부담) 개발사업시행자(LH 등) 등 교통수요 유발자 부담 원칙*

*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지침」 제19조

- (추진절차) 광역교통개선대책(안) 제출(수립권자 → 대광위) → KOTI 평가센터 검토 → 대도시권광역위원회(실무위·권역위) 심의·확정